

I. 서언

신문방송을 포함해서 대중매체에 의한 보도활동은 사회, 개인, 집단, 문화 전반에 걸쳐 각각 순기능적인 면이 많지만 역기능적인 면도공유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대중매체의 보도활동은 모든 계층에 정보를 고루 전달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감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고, 전쟁, 태풍, 지진 등 외부로부터의 긴박한 위협, 또는 위협을 경고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케 하는 것, 열차, 선박의 발착시간, 증권시세 등 사회적 요청을 보조하는 것, 사회에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위, 예컨대 정치적 부정, 경제적 독직, 범죄, 매음, 도박, 마약흡입 등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강제하는 따위가 순기능에 속한다. 그러나 특히 보도활동에 있어 정치적 부패, 공직자의 부정, 범죄사건 등등 그 내용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보도하고 언론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것을 보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본의건 아니건 간에 때로는 졸속, 부실, 편파적인 보도로 사회적 불안이나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 또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따위는 분명히 역기능에 속한다. 특히 후진 사회일수록 대중매체의 역기능적 일면이 두드러지기 쉬운데 선진 민주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그와 같은 부정적 일면이 간혹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난 1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된 사건들과 시정권고사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6.29 선언 이후 최근에 들어 언론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했다고 호소하는 중재신청이 격증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최근 들어 중재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울러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적 측면은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는 면이다. 과거에는 막강한 언론의 위세에 눌려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가 있다 해도 자기주장을 내세울 엄두도 못냈으나 이제는 당당히 언론과 맞서 싸울 만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기 때문에 중재신청이 늘어났다고 볼 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아직도 우리 언론 일각에는 언론의 기본적 자세가 덜 정립된 부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표 1) 정기간행물 등록현황(6. 29대비, '88, '89, '90)

('90. 7. 31 현재)

구분	장별	인 가 (통신)	주 간	월 간	격월간	계 간	반년간	연 간	계
공 보 처	유 가	78(1)	715	1,239	88	187	51	85	2,443(1)
	무 가	1(1)	241	658	246	357	92	23	1,618(1)
	계	79(2)	956	1,897	334	544	143	108	4,061(2)
서 울 시				328	102	125	32	-	587
부 산 시				19	7	10	-	1	37
인 천 시				9	6	5	2	-	22
대 구 시				11	3	3	-	-	17
광 주 시				2	1	2	-	-	5
대 전 시				2	4	2	-	-	8
강 원 도				2	-	3	1	-	6
경 기 도				23	10	10	6	-	49
충 청 북 도				3	-	1	-	-	4
충 청 남 도				-	-	-	-	-	-
전 라 북 도				1	3	2	-	1	7
전 라 남 도				2	-	1	-	-	3
경 상 북 도				8	-	5	1	-	14
경 상 남 도				20	9	8	3	-	40
세 주 도				2	-	1	-	-	3
시 도 계				432	145	178	45	2	802
합 계		79(2)	956	2,329	479	722	188	110	4,863(2)
6. 29 이 전 ('87. 6. 30)		32(2)	201	1,203	283	413	104	-	2,236(2)
증 감		47(0)	755	1,126	196	309	84	110	2,627(0)
'88. 12. 31		67(2)	496	1,733	-	-	-	1,092	3,388(2)
'89. 12. 31		72(2)	819	2,137	444	674	165	91	4,402(2)

그보다도 전문언론인이 갖춰야 할 윤리적 자세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새 언론관계법이 제정된 이후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2,236 개 밖에 없던 정기간행물이 불과 3년 사이에 4,863 개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 32 개뿐이던 일간지가 79 개 (통신 2 개 포함)로, 201 개이던 주간지가 956 개로 4 배이상, 1,203 개이던 월간지도 2,329 개로, 격월간이 283 개에서 479 개로, 계간이 413 개에서 722 개로, 반년간은 104 개가 188 개로, 년간은 새롭게 110 개가 창간되었다. 이처럼 언론매체가 엄청나게 늘었을 뿐 아니라, 자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증면, 증간이 계속되면서 자연히 일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언론정도에서 일탈하는 제작경향도 간혹 눈에 띄고 있다. 한편 갑자기 팽창한 언론매체가 필요로 하는만큼 전문언론인의 수가 결정적으로 부족(3년동안에 2 배로 늘어난 만큼 매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언론인이 갑자기 양산될 수 없어 최근 각언론사간에 유능한 언론인의 스카웃이 성행되고 있음)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중재위원회에서 처리됐고 또 실제사건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참조).

II. 중재신청의 처리상황

정식합의는 26%, 실질적으로 50%선

6.29 이후 신청 점증, 90 년들어 격증

명예훼손, 신용권침해가 대종

1981 년 이후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된 사건은 1981~1989 년까지 9 년간에 550 건이 접수돼, 그 중 142 건(26%)이 쌍방향합의로 중재가 성립됐고, 불성립이 176 건(32%), 기각 11 건(2%), 각하 12 건(2%), 취하 209 건(38%)으로 되어 있다. 피해를 입었다고 중재신청을 했다가 신청인 측이 취하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되었으나 그 중에는 중재신청 이후 언론사측에서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정 내지 해명성 기사를 게재한 예가 적지 않아 성질상 그것을 준합강으로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볼 때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피해구제가 된 비율은 훨씬 높다(50%)고 판단된다. 한편 중재신청건수를 연도별로 구분해 볼 때 1981 년에서 1988 년까지는 대개 연간 40~50 건 범위에 머물렀으나 1989 년도는 신청건수가 연간 121 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와 같은 경향은 1990 년도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져 7 월 31 일 현재로 이미 90 건이나 접수돼 이대로 나간다면 1990 년도에는 1989 년도의 121 건을 훨씬 웃도는 중재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표 2>참조). 1981 년에서 1989 년까지 접수된 사건 중 침해유형별로 중재사건을 구분해 보면 명예훼손이 382 건(69%)으로 가장 많고, 신용권침해가 149 건(27%)으로 2 위, 사생활침해 10 건(2%), 저작권침해 9 건(2%)의 순이다. 1990 년(75 건)에 들어서도 그와 같은 경향은 변함이 별로 없어 명예훼손이 66 건(88%), 신용권침해 9 건(12%)이나, 사건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호소가부적 늘어나고 있다. 매체 별로는 중재신청의 대상매체 중 일간신문이 1981~1989 년 사이에 328 건(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방송 62 건(11%), 주간신문 45 건(8%), 주간지 44 건(8%), 월간지 42 건(8%), 통신 26 건(5%), 월간신문 2 건(0.4%)등으로 되어 있어, 역시 속보를 위주로 하는 일간신문, 방송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앞서고 있다. 1990 년도에 들어서도 그와 같은 경향은 비슷하여 신문이 90 건의 중재신청건수 중 59 건(66%)으로 가장 많고 그전과 달리 주간신문이 16 건(18%)으로 2 위, 월간지가 8 건(9%)으로 3 위, 방송은 6 건(7%)으로 4 위로 처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주간지나 월간지가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기사로 중재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이것을 지역별로 분류해 볼 때 중재대상이 된 매체는 지 방지보다는 중앙지가 많았고, 그 다음이 주간신문, 월간지의 순위로 되었는데 중앙의 방송보다는 지방방송이 중재대상에 더 오르고 있다(1989 년의 경우).

(표 2) 언론중재신청처리현황

'81. 3. 31~'90. 7. 31

구 분	신청건수	중재결과						원래유형별분류				매체별분류						신청인수		
		합계	중정당	기각	각하	취하	제류	매체	지정항	신문인	지정인	신문	통신	방송	주간신문	월간지	월간지		신문	기타
'81년	44	9	12	1	2	20		21	2	15	6	34	4	2	2	2	4			22
'82년	50	19	19		2	10		39	2	9		19	2	13	3	9	2			35
'83년	71	21	22	1	1	26		57	1	13		47	5	4	6	6	6	1		39
'84년	54	12	29	3		10		39		12	3	27	1	10	5	5	1			43
'85년	50	12	28	4		15		44		15		41	6	1	5	4	10	1		42
'86년	49	14	10	1		24		22	3	24		21		5	4	9	7			47
'87년	47	10	9	1		27		39		8		20	3	5	4	7	6	1		38
'88년	55	16	12		1	26		36		19		38	1	4	5	1	6			54
'89년	121	29	35		6	51		85	2	34		81	4	18	11	1	8			97
'90년	90	24	25	1	1	38	1	73		17		59		6	16	1				65
계	640	166 (26%)	201 (31%)	12 (2%)	13 (2%)	247 (39%)	1	455 (71%)	10 (2%)	166 (26%)	9 (1%)	387 (60%)	26 (4%)	68 (11%)	61 (9%)	45 (7%)	50 (8%)	2	1	482



그러나 1990 년도에 들어서 7 월 31 일 현재로 중재접수된 상황을 보면 90 건 중 중앙지가 40 건, 지방지가 19 건, 주간신문이 16 건, 월간지 8 건으로 종래의 경향과 비슷하나 주간신문의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방송의 경우, 오히려 중앙의 방송매체가 중재대상에 더 오른 것이 달라진 점이다(<표 3> 참조).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의 유형을 보면 1981~1989 년의 경우 총 신청건수 550 건 중 개인이 300 건(55%)으로 가장 많고, 회사가 118 건(21%)으로 2 위, 일반단체가 79 건(14%)으로 3 위, 그 다음이 공공기관 · 단체 21 건(4%), 종교단체 20 건(4%), 학교 10 건(2%), 종친회 2 건(0.4%) 등의 순위이다.

〈표 3〉 매체유형별 중재대상

'81. 3. 31~'90. 7. 31

구분 연도	중앙지	지방지	통신	중앙방송	지방방송	주간신문	월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기타	계
'81년	27 (61%)	7 (15%)	4 (9%)	2 (5%)		2 (5%)		2 (5%)			44
'82년	16 (32%)	3 (6%)	2 (4%)	10 (20%)	3 (6%)	3 (6%)		9 (18%)	4 (8%)		50
'83년	34 (48%)	13 (18%)	5 (7%)	3 (4%)	1 (1%)	6 (9%)	1 (1%)	6 (9%)	2 (3%)		71
'84년	20 (37%)	7 (13%)	1 (2%)	9 (17%)	1 (2%)	5 (9%)		5 (9%)	6 (11%)		54
'85년	25 (42%)	16 (27%)	6 (10%)	1 (2%)		5 (8%)	1 (2%)	4 (7%)	1 (2%)		59
'86년	13 (27%)	8 (16%)		3 (6%)	2 (4%)	4 (8%)		9 (18%)	10 (20%)		49
'87년	16 (34%)	4 (9%)	3 (6%)	4 (9%)	1 (2%)	4 (9%)		7 (15%)	7 (15%)	1 (2%)	47
'88년	25 (45%)	13 (24%)	1 (2%)	1 (2%)	3 (5%)	5 (9%)		1 (2%)	6 (11%)		55
'89년	50 (41%)	31 (26%)	4 (3%)	8 (7%)	10 (8%)	11 (9%)		1 (1%)	6 (5%)		121
'90년	40 (44%)	19 (21%)		4 (5%)	2 (2%)	16 (18%)		1 (1%)	8 (9%)		90
계	266 (42%)	121 (19%)	26 (4%)	45 (7%)	23 (4%)	61 (9%)	2	45 (7%)	50 (8%)	1	640

〈표 4〉 신청인 유형

'81. 3. 31~'90. 7. 31

구분 연도	개인	일반단체	회사	학교	종교단체	동천회	공공기관 단체	계
'81년	25 (57%)	11 (25%)		1 (2%)			7 (16%)	44
'82년	32 (64%)	6 (12%)	8 (16%)	1 (2%)	2 (4%)		1 (2%)	50
'83년	42 (60%)	10 (14%)	9 (13%)	1 (1%)	7 (10%)	1 (1%)	1 (1%)	71
'84년	36 (67%)	3 (5%)	5 (9%)	1 (2%)	7 (13%)		2 (4%)	54
'85년	33 (56%)	9 (15%)	13 (22%)	3 (5%)	1 (2%)			59
'86년	22 (45%)	5 (10%)	22 (45%)					49
'87년	30 (64%)	4 (9%)	11 (23%)				2 (4%)	47
'88년	23 (42%)	3 (5%)	22 (40%)		2 (4%)	1 (2%)	4 (7%)	55
'89년	57 (47%)	28 (23%)	28 (23%)	3 (2%)	1 (1%)		4 (3%)	121
'90년	43 (48%)	12 (13%)	19 (21%)	3 (3%)	6 (7%)	1 (1%)	6 (7%)	90
계	343 (54%)	91 (14%)	137 (21%)	13 (2%)	26 (4%)	3 (1%)	27 (4%)	640

1990년에 들어서도 역시 개인이 43건으로 1위, 회사가 19건, 일반단체가 12건으로 종전의 경향과 비슷하나 종교단체가 6건으로 공공기관·단체의 6건과 같은 것이 종 달라진 것 이외에는 종래의 경향과 별 변화가 없다(<표 4>참조). 침해유형을 보면 1981~1989년의 경우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392건(72%)으로 가장 많고, 신용권(재산)침해가 149건(27%)으로 2위, 1 다음이 저작권 침해 9건(2%)의 순위인데 1990년에 들어서도 역시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용권침해 17건의 순위이다(<표 5>참조).

(표 5) 침해유형

'81. 3. 31~'90. 7. 31

연도	유형	명예 및 사생활	신용권 (재산)	지 작 권	계
'81년		23 (52%)	15 (34%)	6 (14%)	44
'82년		41 (82%)	9 (18%)		50
'83년		58 (82%)	13 (18%)		71
'84년		39 (72%)	12 (22%)	3 (6%)	54
'85년		44 (74%)	15 (26%)		59
'86년		25 (51%)	24 (49%)		49
'87년		39 (83%)	8 (17%)		47
'88년		36 (65%)	19 (35%)		55
'89년		87 (72%)	34 (28%)		121
'90년		73 (81%)	17 (19%)		90
계		465 (73%)	166 (26%)	9 (1%)	640

〈표6〉 취하이유

'81. 3. 31~'90. 7. 31

취하 이유 연도	자진 취하		압력취하	회유 취하		계
	정정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개 인상의 이유 로 인하여	유관기관 사직당국을 동원함으로써	호의표시나 사과에 의하여	정정보도나 기사제재를 약속함으로써	
'81년	1 (5%)	3 (15%)	15 (75%)		1 (5%)	20
'82년		1 (10%)			9 (90%)	10
'83년	2 (8%)	1 (4%)	6 (23%)	6 (23%)	11 (42%)	26
'84년	2 (20%)	1 (10%)		3 (30%)	4 (40%)	10
'85년	5 (33%)	1 (7%)	3 (20%)	4 (27%)	2 (13%)	15
'86년	9 (38%)	8 (33%)	1 (4%)	4 (17%)	2 (8%)	24
'87년	1 (4%)	4 (15%)	4 (15%)	15 (55%)	3 (11%)	27
'88년	7 (27%)	4 (15%)		11 (43%)	4 (15%)	26
'89년	14 (27%)	5 (10%)	1 (2%)	14 (28%)	17 (33%)	51
'90년	11 (29%)	6 (16%)		11 (29%)	10 (26%)	38
계	52 (21%)	34 (14%)	30 (12%)	68 (28%)	63 (25%)	247

〈표7〉 불성립이유

'81. 3. 31~'90. 7. 31

연도	구분 불성립 건수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			합의결렬
		신청인 불출석	피신청인 불출석	쌍방 불출석	
'81년	12	1	6		5
'82년	19	1	7	2	9
'83년	22		8		14
'84년	29	4	6	3	16
'85년	28	3		5	20
'86년	10	1		1	8
'87년	9				9
'88년	12				12
'89년	35		2	1	32
'90년	25		4	1	20
계	201	10	33	13	145

앞서도 약간 지적했으나 중재신청을 하고도 도중에 취하하는 이유로서는 총 209 건의 취하건수 중 자진취하가 69 건(33%), 유관기관의 압력에 의한 취하가 30 건(14.4%)이며, 회유로 인해 취하한 것이 110 건(5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진취하의 경우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취하 전에 정정보도가 되어 취하한 것이 41 건(19.6%),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로 취하한 것이 28 건(13.4%)이었다 또 회유로 인해 취하한 것 중 호의표시나 사과에 의해 취하한 것이 57 건(27.3%)이며 정정보도나 해명성기사의 게재를 약속함으로써 취하한 것도 53 건(25.4%)이나 되었다. 1990 년도에 들어서도 자진취하 17 건(그중 취하 전 정정보도 11 건), 회유에 의한 취하 21 건(그중 10 건은 정정보도 등 약속)인데 유관기관이나 사직당국을 동원해서 신청인에게 압력을 넣어 취하한 예가 1 건도

없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언론기관의 힘을 배경으로 한 횡포(?)랄까 과거의 적폐가 민주화 과정에서 크게 청산됐다고 볼 수도 있다(<표 6>참조). 끝으로 중재불성립 이유를 살펴 보면 1981~1989년까지는 신청인이 출석치 않아 불성립된 예가 합의결렬 125 건 중 10 건이나 있었고, 매체 측의 불출석으로 중재가 이뤄지지 못한 예가 29 건이나 됐으며 쌍방불출석이 12 건이었는데, 1990년에 들어서면서 중재법 내용이 강화(피신청인이 중재기일에 2 회에 걸쳐 불출석시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5J)된 것이 인식되고 있음인지, 신청인측의 불출석 사례는 전혀 없고 피신청인측 불출석은 4 건, 쌍방불출석은 1 건(합의결렬 25 건 중)에 불과해 언론중재의 취지가 점차 일반적으로 인식돼 가고 있는 추세이다(표 7 참조)

III. 시정권고 사례도 날로 늘어

-사생활침해 · 명예훼손 · 미성년피의자신원공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내용,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내용, 인간의 존엄성 또는 가치를 경시하는 내용, 미성년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않도록 권고(시정권고)하고 있는데 이 시정권고사례 역시 최근에 들어서 격증하고 있는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특히 명예 및 사생활침해로 시정권고 된 것이 지난 7월 31일 현재 (1981년 이후) 총계 413건으로 그 중 명예 및 사생활침해가 211건(51%), 미성년피의자 신원공개가 190건(46%)으로 단연 많은데 1989년, 1990년에 들어서서 명예 및 사생활침해사례 또는 미성년피의자 신원공개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인데 그와 같은 사실은 일간신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사건보도에 있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에 관해, 또는 당연히 공표해서는 안될 미성년피의자의 신원공표와 관련해서 일선 취재기자 내지담당 데스크의 주의가 소홀한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특히 일간지 중에서도 새로 창간된 언론사에서 그와 같은 과오를 자주 범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일선기자의 훈련부족 내지 윤리의식의 결여가 원인이 아닌가 짐작된다(<표 8> 참조).

〈표 8〉 시정권고현황

*'90년 6월26일자 보도내용까지 시정권고한 것
('81. 3. 31~'90. 7. 31)

구분 연도	침 해 유 형 별				간 별				권고건수
	명예및사생활침해	인간의 존엄및가치경시	공중도덕및사회윤리저해	비성년피외자신원공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통신	
'81년									
'82년									
'83년		3			1	2			3
'84년									
'85년									
'86년	3						3		3
'87년	6				3	2	1		6
'88년	25	8	1	3	29	2	2	4	37
'89년	88			92	173	1		6	180
'90년	89			95	178			6	184
계	211 (51%)	11 (3%)	1	190 (46%)	384 (93%)	7 (2%)	6 (1%)	16 (4%)	413

IV. 중재사건의 사례분석

이제 중재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사실개요와 보도내용 및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중재위원회 자체가 시정권고를 낸 권익침해사례는 구술로 대처할까 한다.

<사례 1> 고소장 등을 인용한 보도는 일방적이기 쉽다

사례 ①

사실개요

1983년 7월 14일자 서울신문 11면에 『매질남편 경색에 고소』 제하기사가 게재되었는데요지인 즉 「밤늦도록 약국에서 일하다 집에 온 부인이 집에 늦게 온다고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남편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부인 H씨가 3년간 빚을 얻어서까지 S 교회에 헌금을 해, 그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것. 이에 남편을 고소한 부인은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화된 것처럼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빚을 진 사실은 없고, 그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야근하면서 약국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부채관계에 의한 남편의 폭행이 고소사건의 중요한 발단 원인이 아니라,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다」고 주장하고, 왜곡된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 할 것을 요구했다 고소사건이 때로는 뉴스가 될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고소장(고소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음) 내용만을 토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신중을 요한다.

보도내용

『매일 남편 경찰에 고소』, 『2 주 진단서 붙여 약사 부인, 귀가 늦어 싸움 끝에』라는 제하의 기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동작구 H동에 사는 H모씨 (46 세)는 13 일 남편을 처벌해 달라고 2 주 진단서를 첨부 노랑진서에 고소했는데 남편 L모씨 (46 세)가 가정부인이 왜 매일 늦게 들어오느냐며 발로 배를 차고 뺨을 치는 등 전치 2 주의 상처를 입혔다. 남편 L씨는 부인이 1 천 만원의 빚을 얻어 교회에 헌금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늦도록 약국을 받지 않아 불만을 품어 왔으나 폭행을 해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말했는데 L씨 부부는 66 년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으나 최근 3 년간 부인 H씨가 빚을 얻어가며 교회에 헌금을 해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것. H씨는 또 「70 년도에 4 층 빌딩을 지었을 때 빚을 졌고, 은행 및 때문에 건물이 처분될 지경이어서 교회돈을 빌려 부채를 정리, 파란을 면했고, 부채가 정리된 후 그 보답으로 몇 차례 교회에 헌금했으나 빚을 얻어 헌금한 사실은 없다. 밤늦도록 약국을 경영한 사실도 없고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버릇이 있어 정신수양원에 한때 입원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남편이 배를 10 여 차례 찼다고 하는 보도내용 부분은 10 여 회에 걸쳐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허위보도」라고 중재신청을 하였다. 결국 서울신문은 이미 보도된 내용의 기사와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제목과 기사로 정정보도문을 내기로 합의, 그 해 7 월 29 일자 11 면에 정정보도를 했다.

실례 ②

사실개요

1988 년 5 월 11 일자 주간종교 6 면에 『태고종 간부 8 명 피소, 『해직된 전국장들이 진정』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기사내용인즉 「태고종 간부 8 명이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해직된 전직국장들에 의해 사직당국에 피소,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사유는 ▲

보건공제회 자금의 종립 보문고교에의 부당지출 ▲ 불교사회관 건립비용 일부횡령 등」이었다. 사건내용인즉 「1988년 4월 6일 대검찰청에 사신행식으로 접수, 성북경찰서로 이첩돼, 제소자와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박승룡은 「해임된 직원들이 진정한 사실을, 그들이 종단간부를 고소한 것으로 보도, 종단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태고종측은 중재신청 후 주간종교측이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중재신청을 취하, 1988년 6월 22일자 주간종교에 피소된 사실이 없다는 정정보도가 나갔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례①의 경우처럼 고소장을 토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민사사건에 계류중인 사건보도도 신중을 요함). 그 까닭인즉 고소내용은 일방적인 것이 많고 피고소인의 주장 역시 '고소내용과 상반될 수 밖에 없으니' 기자가 판단해서 그 시비를 가리는 모험은 피하는 것이 옳다.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쌍방의 주장을 형평 되게 취급해야 하며 그렇다 해도 피상적인 보도를 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실례②의 경우는 진정서와 고소장의 성격조차 제대로 분간 못하고 마치 고소사건을 당국에서 수사한 것 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검찰에 낸 진정서는 어떠한 진정서이건 그 진정을 한 사람의 신분이 확인될 경우 일단 관할 경찰에 이첩 조사하게 돼 있어, 고소사건과는 전혀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례 2> 의료관계분쟁, 보도할 때는 전문가 판단 곁들여야

실례①

사실개요

의료관계로 치료를 하는 측과 환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예가 많고 그것이 해결 안돼 법정으로까지 번지는 예가 있는데 간혹 의료관계전문지식이 없는 환자 내지 가족들의 일방적 주장만 지면에 반영, 문제가 제기되는 예가 있다. 1984년 8월 27일 동아일보 10면에 『윤화 입원서적판매원 「치료 소홀로 불구 진정」』 제하의 기사가 실례의

하나 「서적외관원 차정순(34 · 충남 서산읍 동문리)이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이웃 조모의과에 입원했는데 조의사는 한번도 치료를 않고 간호원이 상처부위를 꺾매고 X-레이를 찍은 후 부목을 한 후 경과가 좋다고 퇴원을 권고, 퇴원하여 서울가톨릭의대 부속병원(강남성모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상처가 전혀 치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수술을 해도 목발신세를 못 면하게 됐다고 조의사를 대권지검에 고소했다」는 것이
기사의 요점
조의사는 「차씨가 입원한 후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안정을 요하는 시기에 환자가 임의로 3번 퇴원, 기브스 등에 손을 대어 치료 경과를 그르쳤고 강남성모병원 담당의사의 진단결과 역시 초진과 치료가 잘돼 재수술의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환자의 일방적 주장만 들어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정정보도하라」고 중재신청에 이른 것.

보도내용

『윤화 입원 서적외관원 「치료 소홀로 불구」』 제하기사는 「서산=기동취재반」이 동아일보(1984. 8. 27)에 보도한 것으로 서적판매원 차정순(34)이 윤화로 무릎을 다쳐 동네 조모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받아 불구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관계당국에 진정했다는 서두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① 8월 21일 저녁 병원에서 차씨는 조원장의 부인과 치료문제로 말다툼하다 수술실에서 뛰쳐 나온 조씨에게 뺨을 맞고 쓰러졌다 ② 오토바이에 치어 병원에 입원(3월 29일)한 후 17일 동안, 조의사의 진찰을 한번도 못 받고 운전기사와 간호원 2명이 X-레이를 적고 상처부위를 꺾매 후 목발을 매줬을 뿐이다. ③ 경과가 좋다는 진단에 따라 4월 15일 퇴원, 통증이 심해 서울강남성모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골절치유가 안돼 있어 수술을 받아도 목발신세를 못 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④ 차씨는 '벼 부러진 환자에게 머규로크롬을 발라주고 소염제만 투여하면 그만이냐'고 불만을 터뜨리자, 조의사는 '수술 여부는 환자의 용태에 따라 의사가 결정한다. 집도하지 않은 것은 상처가 자연상태에서 봉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⑤ 병원 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검찰에 고소, 서산서에 사건이 이첩됐으나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이 보도내용 기사가 차씨의 고소, 진정 내용에 편중된 감이 있고, 결국 그 해 10월 23일자 지면에 동체보는 속보형 식으로 정정보도를 냄으로써 사건은 해결되었다.

실례②

사실개요

『척추수술 받고 혼수상태서 숨져』, 『가족들 「정확한 사인 밝혀달라」 호소』 제하의 기사가 부산일보 1988년 2월 15일자 10면에 게재되었는데, 내용인즉 「부산 우리들 병원에서 디스크증세로 척추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50대 여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혼수상태 끝에 숨져, 가족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라고 호소하자 담당적모의사는 '치료도중 고혈압으로 뇌졸중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출혈 증세가 동시 병발한 것으로, 뇌졸중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데 입원치료 중에 발병했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는 것. 이에 우리들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척추수술이 죽음을 유도한다는 「비과학적」 추측보도는 많은 척추질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를 포기」케 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요구, 중재결과 병원 측이 작성한 「척추디스크 치료법」 원고를 보도하기로 한의 1988년 3월 22일 부산일보 8면에 합의사항이 보도되었다.

보도내용

전술한 바 『척추수술 받고 혼수상태에서 숨져』 제하 기사에서 부산일보는 「동래구 안락동 425의 25 전도순(여·58)의 딸 박름이(35)에 따르면 어머니 (전씨)가 1988년 1월 7일 이웃 우리들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치료 중 같은 달 17일째부터 전신이 심하게 붓고 토혈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오다 2월 8일 밤부터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3일 하오 숨졌다는 것으로, 1987년 12월부터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각씨는 같은 달 26일 우리들병원에서 4번 척추돌출의 (요추강협착증 및 디스크탈출증)으로 진단이 내려 통원치료 후 1월 5일 입원, 이틀간 정밀검사 후 수술을 받았다는 것. 정밀검사 때 당뇨와 고혈압(180~110) 및 왼쪽심장 비대증세가 나타나 병원 측은 이 같은 지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수술때 전신마취 대신 부분(척추)마취만 했고, 수술 후 10여 일간 경과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열흘쯤 후부터 전신이 붓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병원 측이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했으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담당각모의사는 앞서 지적한 바 뇌졸중에 이른 경과를 해명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한마디로 실례①이나 ②의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관계 분쟁의 경우 관계가족들의 고소나 진정내용에만 의존, 경솔히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①의 경우 「기동취재」로 긴급하게 보도할 대상이 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봐야 된다. 특히 의료관계 분규의 경우 의료관계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며, 의료지식이 충분치 못한 환자 내지 그 가족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의사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최근 의료분규로 의사들이 법정에서 서게 되는 예가 늘어나자 경우에 따라 아예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사태마저 빈발하고 있는데, 소생 여부가 불분명한 응급환자가 특히 야간에 진료거부 때문에 여러 병원을 돌다가 끝내 숨지는 예마저 일어나고 있다. 경우가 어떠했건 의사는 인명구호의 방향으로,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취재에 임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례 3> TV 출연자의 발언내용을 삭제방영……원칙적으로 사전합의해야……

사례①

사실개요

1982년 2월 13일 KBS-2TV의 「시민법정」 프로그램에서 「택시합승」에 관한 내용을 방영했다. 이 「시민법정」은 고발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택시합승행위」를 피고로 하여 관계증인들에 대한 검사 측 심문과 변호인 측 반대심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녹화 당시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연한 조대훈(전국자동차노조연맹 연구위원)은 택시운전사의 입장에서 택시 합승의 부조리, 합승행위의원인 및 시정방법 등을 증언했다 그런데 실제 방영될 때 조대훈의 증언 중 택시합승의 부조리에 관한 대목만 방영됐다. 사전합의 하에 녹화는 했으나 실제 방영된 것은 증언한 조대훈과 아무 협의없이 합승의 부조리를 증언한 부분만이 클로즈업 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의 시간상 제약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는 그 내용이 크게 왜곡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축성 있게 그 내용이 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어떤 부분을 죽이고(삭제), 어떤 대목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애당초 녹화된 내용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시사문제 등 시청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특히 외부인사가 출연할 경우, 생방송일 때에는 말하는 그대로가 전파를 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염려가 없지만 녹주, 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에는 방송전문가가 아닌 일반출연자가 말한 내용을 모두 전파에 실어 내보내는 데는 방송기술상 고려할 점이 있고 그것이 방송담당자들의 사정에 따라 재편집, 방영되는 예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간혹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도내용

「택시합승」에 관한 「시민법정」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전에 조대훈은 그 프로그램제작팀과(대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전 협의한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대해서 증언내용 장면을 녹화하였다(조대훈은 자료수집 출연시의 발언에 대비하여 원고를 작성, 만 3일간 애써 준비한 내용을 녹화했으나 KBS는 많은 부분을 삭제한후 방영 하였다는 것이다)연대훈은 특히 전국자동차노련 연구위원인 만큼, 「동연맹 조합원」(택시운전사)의 입장에서 ① 부조리를 알면서도 택시합승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② 근본적인 시정책을 제시하려고 TV에 출연했으나 증언내용이 대부분 삭제 방영돼 출연목적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노조간부가 「택시합승의 불법성만 강조, 운전기사들이 부득이 합승을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여건과 근본시정 책은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많은 항의를 받아, 노조간부로서의 체면이 손상됐고, 직장에서 문책까지 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KBS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 후(1982.3. 26) 같은 「시민법정」 프로그램의 단 항목에서 조대훈의 주장이 방영되었다.

실례②

사실개요

1989년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방영된 KBS-3TV의 「KBS 21세기 강좌」 프로그램에 한상진 교수가 출연, 「중민화의 길」을 강의한내용이 40분간 방영되었다. 원래 60분짜리로 녹화되었으나 KBS가 20분을 줄여 방영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재신청을 한 한교수는 KBS가 강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편집, 그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 원래 녹화된 내용대로 재방송을 요구하였다. 중재결과, KBS측은 녹화테이프(편집이전의 것)가 보관돼 있지 않아 재방이 불가능할 뿐더러 편성권은 방송국 고유의 권한이므로 재방송은 물론 사과방송도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는 불성립되었다.

보도내용

40분에 걸쳐 방영된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소개할 수 없으나 한교수는 「중민」이라고 불려온 우리사회의 근대적, 진취적 집단들의 성장과정, 그 성격과 지향하는 바를 분석, 이들이 당면한 장애요소를 점검, 이들이 21세기의 주역으로 말아야 할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적극조명하기 위해 13개의 도표와 3개의 그림까지 마련, 자세한 강의에 임했다 그런데 ①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설명이 표와 함께 삭제되었고, ② 미래사회의 주역을 둘러싼 경쟁모델이 삭제되었으며, ③ 「중민」의 일부로서 학생청년 세대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으나 KBS는 학생들의 행동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대목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대변해 온 민주문화적 성격,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차원에서의 전위적 역할, 사회제도에 진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성의 수혈 등은 모두 삭제되었다고 한교수는 주장, 일방적 내용 삭제로 흐름의 중단, 논리의 비약, 내용의 왜곡 등으로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재방과, 5회에 걸친 해명사과문의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활자매체도 공통된 면이 있으나 신문과 같은 활자매체 이상으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방송이다(보도대상 내용의 요약). 특히 방송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송전문가가 아닌 외부인사가 출연할 때 방송에 알맞은 내용을 도출해 내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곁들여질 수 밖에 없다. 방송이 의도한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멋대로 발언한 것까지 모두 전파에 실어 내보내는 것은 시간의 낭비임과 동시에 시청자를 곤혹스럽게 만들며, 사리에 맞는 내용이라도 너무 장황할 때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대목만 편집, 방송하는 것이 방송담당자가 항상 겪어야 되는 고충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출연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방송사의 구미에 맞춰 아무런 사전양해도 없이 한 부분만을 편집, 방영하는 것은 우선 도의적인 면에서 안될 일이고,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사실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옳다. 출연자의 발언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아예 그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방송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는 활자매체와 달리, 시청자들에게 순간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관한 내용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사례 4>

기고된 내용의 허위사실은 매체에 책임공표된 논문 문제됐을 땐 반론 수용해야

사례①

사실개요

인기성우 고은정이 기고한 일간스포츠 기획연재물 「방송야화」(제 43 회 1981. 11. 19)란에 라디오드라마의 황금기였던 시절의 방송제작과정과 성우들의 일화가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가운데 인기성우 윤미림의 사생활 일부가 공개되었다. 특히 그녀의 학력과 소재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했다며 정정을 요구, 중재를 신청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공개보도 했을 때 그것이 외부인의 기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책임은 이를 발표한 매체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 중재신청의 요점이다. 문제된 기획연재물 「방송야화」 제 43 회에서 고은정이 역은 윤미림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목, 즉 「...학적부에 이름이 없는 학생이 출연을 해도 경연대회에서 입을 주는 이런 풍토가 지금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지만 그때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혜택으로 KBS의 1기생인 윤미림은 경희대 전신인 신흥대의 연극에서 수상을 계기로 학교에 편입되었고, 졸업 후 어느 만큼의 공간이 있다가 결국 동국대학원을 거쳐 일본 천리대에 까지 가서 철학을 전공한 학자가 되었고, 지금은 소식조차 알 길이 없다. (후포)」 방송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대목이 필요했는지? 아리송한 내용이 아닐까?

실례②

사실개요

㉠ 경향신문 1989년 3월 17일자 10면에 『PE 랩에서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식품포장재인 랩의 안전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16일 하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영수교수(56·여)가 「국내외 시판 랩의 성분분석에 관한 보고회」를 갖고 「PE 랩에 발암성 물질인 산화방지제 DLTP가 들어 있다」고 시험결과를 공개, 발암성 물질 DLTP를 「일가독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기사의 요점에 대해 주식회사 「크린랩 N」 대표이사 전병수가 「고영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랩성분의 분석, 검사기관과 검출치를 밝히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된 논문인데 무비판적으로 PE 랩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양 독자를 오인케 했다」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중재결과 경향신문은 「고교수의 연구논문 발표장에서 직접 취재, 보도한 것이니 정정보도는 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반박자료를 제공하면 보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는 불성립. 그러나 1989년 5월 16일자 14면에 신청인측 반론을 보도하였다. ㉡ 1989년 3월 18일자 스포츠서울(11면)에도 『식품포장재 랩』, 『발암물질 공방전 제2라운드』 제하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는 「한국부인회가 최근 PVC 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가급적 PE 랩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양대 고영수 교수가 오히려 PE 랩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펴 랩의 인체유해론에 불이 붙었다」는 내용. 이에 PE 랩 제조회사의 전병수 사장이 역시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연구논문을 취재, 보도한

만큼 정정보도는 할 수 없으나 추후에 「크린철」을 취재, 보도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여 중재는 불성립. 그러나 1989년 5월 17일자 12면에 신청인측 반론을 보도(연합통신 전재)하였다. ㉔ 매일신문은 연합통신을 전재하여 한양대고영수교수의 「국내외 시판 랩의 성분 분석에 관한 보고」에서 『PE 랩에도 암물질』, 『pvc 랩과 같이 산화방지제 포함』 제하의 기사를 1989년 3월 18일자 14면에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크린랩 N 사장 전병수는 매일신문과 연합통신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매일신문은 중재신청에 대해 연합통신을 전재하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중재에 불응했으나 연합통신에서는 PE 랩측의 반론을 추후 보도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우선 대외적으로 공표될 것을 전제로 타인 또는 극히 미묘한 사안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글로 쓸 때,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관련자나 또는 관련사항에 미칠 영향에 관해 재삼 신중히 검토한 후에 공표하는 것이 정도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불분명한 내용일 경우,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사회적 관심의 표적이 될 공익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도 진실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확신을 가지고 발언하거나 기고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을 자의로 공개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쉬우니 위험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개인의 사생활과 연결시켜 공표할 경우 그것이 선의의 표현이라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책임은 1차적으로 기고자에게 있으나 불정확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매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실례①의 경우 「윤미림에 관한 내용 중 ㉔ 경희대학에 들어간 것을 불법으로 학교에 다닌 양 표현한 대목, ㉕ 다니지도 않은 천리대를 다녔다고 쓴 점, ㉖ 엄연히 국내에 살고 있는데 행방이 묘연 하다고 표현한 것은 부당하니 정정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중재가 성립돼 1981년 12월 6일자 일뉴스포츠에 정정보도가 나갔다. 실례② PE 랩의 경우 「암물질」 운운의 기사가 게재된 후 PE 랩측의 반론이 각지에 보도된 바도 있으나, PE 랩측이 한양대 고영수교수를 법원에 제소,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서도 고교수의 「논문」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며 특히 생산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일반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뿐더러 기사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의 견해를 곁들이는 것이 보도의 공정성이 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5) 사자의 사진공개는 프라이버시침해 유명인의 사인보도 사실근거해야

「사자는 무언」이라는 명언도 있지만 사자와관련된 보도로 문제된 예가 두가지 있다

실례 ①

사실개요

여성동아 1982년 4월호부터 6월호에 걸쳐 연재된 「평전- 아! 전해린 천재의 불꽃놀이」가 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족의 항의로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었는데 번역문학가 리덕희씨의 연속 집필로 된 내용이 사실을 왜곡, 공익과 무관한 사자의 사생활을 억측과 가십으로 평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고 유족들이 주장, 평전 연재의 중지, 사과문의 게재 및 자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밝히려는 요구였다. 중재결과 여성동아는 연재하던 평전을 7월호에는 쉬고, 8월호에 「전혜린평전」 최종회를 제 3의 평자에 의한 「전혜린 리전」과 함께 게재키로 합의하여 『평전 -아! 전해린 천재의 불꽃놀이-안개속의 인물 (장 아제베도)』라는 제하의 글(최종회)과 제 3의 평자가 쓴 『전혜린의 인생과 문학-목마른 계절에 편 야생화』라는 제하의 「전혜린 약전」을 함께 게재, 사태는 수습됐다.

보도내용

문제가 된 대목은 「'새코날 마흔 알을 흰 걸로 구했어!' 그녀는 좋아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중략) 그녀는 불면증 때문에 늘상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때때로 신경을 마취시키기 위해 (매개물)로 그걸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짐작컨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자살이건 과실이건 간에-바로 40살의 새코날 이었음에 틀림없다. (이하 생략)」 한편 문제된 평전 속에 전해린이 죽기 며칠 전 C씨에게 쓴 편지의 일부(미발송)도 공개되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사자의 사생활을 억측과 가십형식으로 평했다면 그것은 분명 사자의 명예훼손뿐 아니라 유족의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사자의 순수한 사신을 유족의 허락없이 공개하거나 일기를 공개하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다. 심장마비로 1965년 1월 11일 31세로 간 전해린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케 기술한 점, 사망에 의혹이 있는 듯이 기술한 점, 사자 유족의 사진을 승락없이 지면에 공개한 것 등은 정상적인 보도행위가 아니다.

실례 ②

사실개요

1961년 4월 21일 상오 9시 반 당시 서울지법 근무 황윤석판사(최초의 여판사)가 자택(성동 구 신당동)에서 시체로 발견되자 당초 신문은 황판사가 남편 손씨와 함께 음독한 것으로 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 시체 해부 및 토사물감정결과, 사인을 약물에 의한 사고사로 단정, 점출된 약물이 감기약 베나드릴과 아스피린 및 요힘빈이라고 밝혔다. 검찰(담당 오역근검사)은 독살혐의를 두고 수사, 한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구속되기도 했으나 남편이 요힘빈 복용을 극력 부인, 약을 먹은 정황도 수사에 안 나타나, 두 사람의 구속을 풀고 수사는 계속됐으며, 시체를 해부 재감정했으나 요힘빈은 검출안되고 불화기산만 검출돼, 그 후 검찰이 미 극동사령부 감식소에 고인의 위액, 피, 소변을 보내 분석한 결과 역시 요힘빈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이 남편 손씨만 유기치사혐의로 구속기소해 1심에서 유죄(징역 4년)였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보도내용

4·19 이후 혼란한 시기였던 1961년 5월 황판사의 사인 보도는 실로 요란했다. 그가 최초의 여판사이고 사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출된 약품이 최음제인 요힘빈이라고 경찰이 밝힌 데서 선정적인 각도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남편 손씨의 주장은 지면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고 법의 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내용(요힘빈이 검출 안된 점)이 제대로 취급되지 않았다. 경찰수사내용이 후에 번복됐으나 사인에 대한 의혹은 남게 되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전말을 지닌 황판사 변사사건을 사건이 있는 지 20여년 후인 1984년 월간 「여원」이 1월호에 『한국 최초의 여판사 황윤석 그의 의문의 죽음』 제하의 글을 실어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됐는데 직접취재가 아닌 간접취재(많은 부분을 당시의 신문보도 인용)라는 위험한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사례 6)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부탁, 경찰조사에 불응」
정정보도중재거부, 결국 판결따라 정정**

사실개요

1989년 1월 30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막내 아들의 죽음을 비관한 가족 3명(부, 모, 큰아들)이 음독,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자, 각 신문이 연속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살사건」에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재수사에 나섰다는 보도와 함께 먼저 죽은 막내아들의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일부 신문이 보도하였다. 특히 1989년 2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기사 「장애아들 죽음 비관 동반자살, 아들 사망진단서는 가짜」라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당시 동아일보는 『차남 사망진단서 허위로 작성 등 「일가 자살」사건 의혹」 제하로 보도). 막내아들의 사망진단서를 그의 이모 리청자씨가 부탁, 그 내용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한겨레신문이 보도하자 「사실과 다르며, 허위진단서를 발급 의료법 위반혐의로 관계의사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근거가 없는데 잡지사기자들이 몰려들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측은 경찰공문을 근거로 기사화했으며 정확한 보도이나 「수사가 최종결론이 나면 속보로 보도하겠다」고 주장, 중재는 불성립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문제를 다시 법원에 제소(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 한겨레신문은 1989년 3월 14일자에 속보(해명기사)를 실었으나, 재판부는 「속보기사는 중재대상기사 일부와 상치되며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 신청인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한겨레신문이 불복, 항소했으나 신청인은 1심 판결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1989년 8월 27일자 11면에 신청인의 요구내용대로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다.

보도내용

1989년 2월 4일자 11면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일가족 3명 집단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발 앞서 숨진 김이군(19세)에 대한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는데, 그 의사는 죽은 김군의 이모(이청자)의 부탁을 받고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 김군을 화장케 해 검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2월 5일자 한겨레신문(11면)은 속보로 계속 의사 전씨에 대한 혐의추궁과 리청자씨의 경찰출두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경찰은 어떤 사건이건 일단 의문점을 두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나 그것이 꼭 사실과 부합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내용을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냉정하고 신중한 취재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건도 기자의 지나친 추리가 경찰의 수사를 앞서 단정적인 보도를 하게 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부 신문보도의 내용을 보면, 죽은 아들의 사인에서부터, 뒤따라 집단 자살한 3명의 가족의 사인이 어떻게 보면 매우 지능적으로 일가족을 몰살(?)함으로써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노린 추리소설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풍기는 대목이 엿보였다. 매우 위험한 보도자세로 경계를 요할 점이다

<사례 7> 자발적 정정보도, 미흡할 땐 재정정도

실례 ①

사실개요

1981년 4월 17일 밤 10시 반쯤 울산의 모여고생(18세)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귀가 도중, 울산시 성남동 소재 D 타자학원 건물 앞에서 20대 청년으로부터 타자학원(4층 옥상)에 있는 「여자를 좀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자 무심코 그 청년을 따라 옥상까지 갔을 때, 옥상엔 아무도 없고 갑자기 그 청년이 여고생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 하자, 반항하던 끝에 위기를 벗어나려고 옥상에서 뛰어 내려, 손계리골, 다리골절로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부산일보와 경남신문은 18일자 지면에 경찰조서를 토대로 피해여학생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욕을 당한 양 보도하였다. 비록 여고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기사내용으로 미뤄 주변사람들(특히 동급생)이 그 여학생이 누구인지를 추지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허위보도라고 항의, 1 단 기사로 정정했으나 미흡하다고 재정정을 요구, 중재를 신청했다.

보도내용

부산일보는 4월 18일자 4면에 『만행 당한 여고생 4층 옥상서 투신』 제하기사로 「17일 밤 11시 45분께 성남 등 226의 43대 흥타자학원 4층 옥상에서 시내 모여고생(18)이 투신자살하려 뛰어내려 중태, S 병원에 입원가로 중으로 경찰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대흥타자학원 앞을 지나다가 20대 남자(성명 미상)에게 학원 옥상으로 끌려가 심한 매를 맞고 욕을 당했다는데 이를 비관, 자살을 기도했다」고 보도했고, 경남신문도 같은 날짜 11면에 『불량배에 봉욕 비관 여고생 옥상에서 투신 중태』 제하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경남신문의 경우 피해 학생의 학교소재지, 학년, 성까지 밝히면서 「욕을 당한 후 이를 비관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기도,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 입원 중인 병원 이름까지 밝혔다. 물론 전기 두 신문 모두, 경찰조서를 토대로 보도했으나 사건보도 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가 있자 일단 1 단 기사로 정정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어머니 (G 씨)는 정정보도내용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 「허위보도로 인해 주위사랑과 학우들이 모두 피해 학생이 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실이 아닌 것을 크게 정정보도, 어린 여학생의 오명을 씻어 달라」고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부산 일보는 자진정정보도(4월 25일자)를 했으니 정정할 수 없다고 거부, 중재에 불응했고 경남신문은 중재기일에 불출석, 불성립으로 끝났으나 범인검거 후 두 신문 모두 속보형식으로 「여고생의 순결」을 밝혀 결국 피해여학생 어머니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미성년자가 성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성년 부녀자의 경우도 같음),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또 한번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순결이 더럽혀졌다는 오명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명예를 훼손당하는 이중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이다. 경찰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다 하더라도 보도기관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관계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산일보의 경우 피해 장소를 명시, 피해 학생의 재적학교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주위사람과 학우들이 손쉽게 피해 학생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내용이 돼 있고 경남신문의 경우 피해 학생의 재적학교, 학년, 성까지 밝혔으며 입원한 병원 등을 밝혀 신분을 뚜렷이 노출시킨 과오를 범했다. 허위사실이 보도되자 피해 여학생은 비관 끝에 등교 않고 두문불출하였다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성폭행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선정적인, 또는 흥미위주의 보도자세는 엄격히 지양해야 하며 언론의 품위를 위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옳다.

V. 맺는 말

사건보도에 의한 권익침해사례분석에서 예시했듯이 본의건 아니건 간에 언론사의 잘못으로 오보가 날 경우, 그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입는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특히 언론매체가 비대해지고, 첨단기술이 발달할수록 보도내용의 전파가 광범, 신속해 오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보도활동의 역기능을 예방하자면 우선 언론사 자체가 졸속보도, 선정적인 보도, 공평치 못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일선기자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취재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설혹 일선취재 내용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김없이 바로잡는 능력 있는 데스크의 양성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출기자들의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인이 되기 위한 기술적인 수련도 쌓아야 되지만 우선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 윤리관의 확립 없이는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말하고 싶은 것은 오보가 났을 때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의 반론을 수용하여, 최단 시일 안에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협력하는 언론사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본다.

보성전문 상과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역임

현재 대한언론인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